

기 안 용 지

제 14호
1963. 8. 27

자 체	기관지	전설국관리과 조 덕 기	전화번호 463	근거서류집수일자
수	담임	관리과장	전설국장	부2시 장 사
		결		Min 8/28
관	체	관	토목과장	조장관
서	명	조장관		
기	년	월	일	1963. 8. 27
분	기	번호	1242, 412	전체통제
경	수	참	유신조	발신
제	목	도로수익과 부담금 부과조령		
<p>안 1. 안양동 ~ 미아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수익과 부담금을 서울특별시 도로수익과 부담금 징수조령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조령 하고자 함이다.</p> <p>가. 부담금 부과 내역</p> <p>(1) 총공사비 98970,290</p> <p>(2) 부과총액 19,794,058 (20%)</p> <p>(3) 감면액 10,612,237 (조령 13, 14조 4거)</p> <p>(4) 부과액 9,181,821</p> <p>(5) 부담과 횡단 1,066명</p>				
안 =				602

안
고시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77호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 2
조의 취정에 의하여 다음 노선에 도로수익자 부담
금을 부과 한다.

제 1963년 8월 28일

서울특별시청 인 태 일

1. 공사명 안암동~미아리간 도로확장공사.

2. 공사종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.

3. 공사착공연월일 1961. 6. 15

4. 공사준공연월일 1962. 12. 6

5. 총공사비 98,970,290

6. 부담금총액 19,794,068

7. 부과구역 안암동, 제기동, 중암동, 하월곡동, 미아동.

8. 부과방법 1시 부과.

안 드

수신 배부취 환주 발신 건설국 강

서울특별시

601

